

마음이 모여 마을이 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 북 구
(의 약 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78
----------	-----

제출년월일 : 2016. 4.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 베이비부머 대상으로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함으로써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검진, 검진비, 검진기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검진기관의 선정, 지원대상, 지원내용(안 제4조 ~ 제6조)

다.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안 제7조)

라.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안 제8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의 임기 2년, 두 차례 연임

마. 지역협의체의 기능(안 제9조)

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안 제10조)

사. 환수조치 등(안 제11조)

아. 상담 지원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비밀누설의 금지(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나.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16. 1. 28 ~ 2. 18, 의견제출 없음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권고안 반영

○ 지역협의체 구성 위원 임기의 연임 횟수를 두차례로 제한(안 제8조제4항)

4) 인권영향평가 결과 : 권고안 반영

○ 위원회 구성 시 특별 성별이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규정(안 제8조제2항)

○ 상담자의 ‘비밀누설의 금지’ 조항 마련(안 제12조 추가)

5) 성별영향평가 결과 : 권고안 반영

○ 위원회 구성 시 특별 성별이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규정(안 제8조제2항)

6) 아동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50대 주민의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검진·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50대를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2.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한다.)”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해 정신건강검진·상담 등의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
3.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상담을 위해 참여하는 정신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방향 및 지원내용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

제4조(검진기관의 선정)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은 선정된 정신의료

기관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50대 주민 중 본인이 동의한 사람으로,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검진실시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역
3. 검진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검진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정신보건전문요원
 3. 정신보건업무 관계 공무원
 4.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정신건강검진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⑤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정신건강검진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검진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허위청구에 의하여 검진기관에 검진비가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③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정신건강검진 중 검진기관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검진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50대 주민을 위한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별도의 추가 예산집행 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중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별도의 추가 예산집행 사항 없음

4. 작성자

의약과장代 이응철